

스위스, 도하 WTO 각료회의서 특허권보호 역설



스위스 정부는 제4차 도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주요 쟁점중의 하나인 필수 의약품의 저가공급 문제와 관련해 개도국의 주요 전염병 퇴치노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도 제약회사의 특허권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스칼 쿠슈팽 경제장관은 도하 각료회의의 기조 연설을 통해 개도국의 보건문제는 특허권이 존중돼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위스국제방송이 전했다.

쿠슈팽 장관은 “우리는 개도국이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필수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도와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이 특허권을 무시하고 복제품을 생산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와 미국은 특허의약품의 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기존의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의 틀 안에서 에이즈 치료제 등의 적정공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개도국 진영은 TRIPS 협정이 인명구조 의약품의 저가공급은 물론 공중보건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특허권 보호를 유예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WTO는 이번 도하 각료회의에서 TRIPS 협정의 재해석에 관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美, 의약 특허권 제외 무역합의 가능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공중보건 질병치료제와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는데 실패해도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다른 합의안은 받아들일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측 대표단의 한 고위관리가 11일 밝혔다.

이 관리는 “미측이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TRIPS)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문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혀왔다”면서 “앞으로 남은 회의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선

언문에 포함될 다른 사안들과 분리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라질과 인도 등 WTO 소속 개발도상국들은 상표등록된 의약품의 염가생산을 겨냥해 각료회의 폐막때 발표될 선언문에 “TRIPS 협약의 어떤 내용도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를 방해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문구가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동기를 꺾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은 앞서 이 문제에 대한 선-후진국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 무역장벽을 낮추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출범을 위협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출처 연합뉴스

WTO 후진국에 대한 의약품 특허권 규정 완화의 파장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후진국에 대한 의약품 특허권 완화 합의에 대해 세계 주요 제약업체들은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 합의로 제약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DS, 말라리아 등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후진국들로 하여금 일반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생산하는데 제약 특허에 대한 WTO 규정을 일정 기간 동안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동안 환자보다 특허권을 우선시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제약업계는 지적재산권(TRIPS) 협정 합의에 명시된 특허권 보장이 희석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BNP 파리바스의 업계 애널리스트인 프랑크 그레고리는 “제약 업체들의 가치는 TRIPS에 대한 원래 해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밝힌 후 “이는 (특허권이라는) 갑옷에 처음으로 구멍이 뚫렸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TRIPS 협정의 유연성 확인 - 업계 단체 특히 이미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TRIPS 세분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수 있어 연간 3천억달러 규모의 제약 업계의 장기적인 수익 전망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돼 있다.

유럽제약업계연맹(EFPI)의 크리스토퍼 드 캘러테이 대변인은 이번 카타르에서 타결된 합의는 현행 TRIPS 협정의 유연성을 확인시켜준 “정치적”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런던에 본사를 둔 파머 프라이싱 앤 리임버스먼트紙의 닐 터너 편집장은 이번 선언문에 이용된 단어가 상당히 애매하며 상당 부분은 각국 정부의 공중 보건 필요에 의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터너 편집장은 또 “9·11 참사”와 탄저균 사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의 AIDS 약품에 대한 논란 등으로 상황이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로이터인터내셔널

美, WIPO서 특허권 무제한 확대 주장



세계 최대 지적재산권 국가인 미국이 특허권 대상을 인간의 모든 활동분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특허대상 확대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열린 제6차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미국은 특허대상의 무제한적 확대를 주장하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그동안 누려온 선점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의도를 내비쳤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73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대부분의 대표단은 이런 미국의 주장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특허대상을 기술분야로 한정하고있으며 93년

Trips협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이 자신들이 고집해온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선등록주의'로 돌아서는 대신 특허대상을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내년 5월에 있을 제7차 특허법상설 위원회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생명공학(Biotechnology), 소프트웨어, 계산방법,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 치료방법(Therapeutic Methods), 심적처리과정(Mental Steps), 원자에너지 및 무기에 대한 발명이 특허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출처 매일경제

'베이징 올림픽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발표



베이징시 류기(劉淇) 시장은 '베이징 올림픽 지적 재산권 보호 규정'을 발표하고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규정에는 17개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규정에 의하면, 올림픽 오륜기, 올림픽 노래, 격언, OLYMPIC, OLYMPIC GAME 등의 명칭과 도형, 중국 올림픽의 휘장과 표지, 마스코트 등 올림픽과 유관한 지적 재산권 객체 모두를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의 책임자는 이번 규정은 '2008년 제 29회 올림픽 주체도시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베이징시와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정식 승인으로 올해 12월31일부터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는 매우 광범위한 국제 위원회의 권익의 규정 또한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올림픽 현장 규정실행, 중국 국가 체육 총국과 베이징시 정부,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서명이 되었던 합동 규정서 이행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 규정의 실시로, 베이징시 시장에서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올림픽 준비위원회 법률 사무소측은 확실한 규정위반 행위, 예를 들어 부동산 광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 신문 등의 매체에서 규정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와 개인, 단체가 재적재산권, 판권 등에 침권행위를 했을 경우, 그에 상당한 민사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또한 3만위안 이하의 벌금과 민사책임도 추궁할 예정이다.

출처 중국경제신문



美 저작권 보호 판결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 음반·영상업계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이 음악복제 방지기술의 보안결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음반업계 단체를 제소한 대학교수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뉴욕 제2순회항소법원이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복제방지 기능을 무력하게 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에 공개한 컬럼니스트의 행동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분쟁에서 당분간 음반·영상업계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업계 측과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및 네티즌들의 반발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뉴욕 제2순회항소법원도 DVD의 복제방지 기능 무력화 소스코드를 온라인에 게재한 컴퓨터 컬럼니스트 에릭 콜레이의 행동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리고 소스코드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콘텐츠 암호화해제 시스템(DeCSS) 프로그램의 공개가 언론자유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인터넷이 포괄하는 범위를 너

무 넓게 잡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DVD 구매는 소비자의 문제지만 복제는 생산자나 저작권 소유자의 문제”라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 연방법원은 스탠퍼드 대학 에드워드 펠튼 교수가 음악 복제방지기술의 보안상 결함을 학회 등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비난하며 미 음반산업연합회(RIAA)를 상대로 제출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자자유재단(EFF) 등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언론자유에 대한 퇴행”이라면서 “법원이 온라인을 검열하지 말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펠튼 교수와 콜레이 소송을 맡고 있는 대표 변호사 신디 콘은 법원들의 결정에 대해 “펠튼 교수가 RIAA의 위협으로 보안결함을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연방법원이 위협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DeCSS에 대해서도 “과기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언론자유”라면서 두 소송 모두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출처 전자신문

저개발국의 지적권 보호제도 관련 논의



1. UN은 제3차 저개발국회의(LDC-3)에서 저개발국의 지적권 보호제도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는 바 지적권 관련 회의의 주요 발표사항을 아래 기술함

가. WIPO(세계 지적재산권기구)

- 저개발국들의 지적권 제도의 도약을 위해서는 비전과 자원(resources)을 가진 특별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WIPO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함. 한 예로서 WIPO는 WIPO World-wide Academy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는 저개발국에서 지재권 교육을 장려하도록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하며, 원거리 교육과 지재권 관련 부서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켜줌.

- 지재권에 관한 세계적인 정보망인 WIPO Net과 관련, 저개발국에게 전자자료 교환 서비스를 포함 지재권행정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음.
- 저개발국들로 하여금 저작권과 관련 권리를 집단관리 할 수 있는 협회(collective management societies)를 신설하고, 각 국가간 협회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관련 정보(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재권 관리 등)를 공유하는 전략을 마련함.
- 지재권 제도에 의해 전통 지식(traditional knowledge)의 보유자의 창조성(creativity)과 기술혁신(innovation)의 보호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임.
- 금년 2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개최된 저개발국과 기술혁신 및 지재권 관련 회의에서 채택된 “리스본 선언”의 우선순위(기술의 획득과 지식의 전달, 지재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협회의 설립, 전통 지식 등의 보호문제)를 정리하여 발표하면서, WIPO 측은 상기와 같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힘.

나. EU 집행위

- 리스본 선언은 저개발국과 그들의 동반자간에 미래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WIPO가 밝힌 가능한 방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EU관련 기구들은 저개발국의 요구를 잘 받아주고 있으며, 집행위는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지재권조약의 이행을 위한 regional framework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
- 그밖에 지재권과 의약품의 접근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함.

다. OAU(아프리카 통일기구)

- 저개발국의 인력 훈련 등 저개발국의 개발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WIPO 프로그램에 많은 공감을 표시하고, 특허정보망인 WIPONet도 저개발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함.

라. 기타

- 지재권 분야에서 많은 국가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얻게되지만 저개발국의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움 호소
- 저개발국에서 작가와 미술가 등에 대한 적절한 로얄티가 지불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집단 관리(collective management)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공동체 특허제도 추진동향





1. EU는 5.31 역내시장 각료이사회를 개최하고, 연 호 공동체 특허 규정안에 관한 12차례에 걸친 실무작업반 회의와 4차례의 상주대표자 회의(COREPER)에서 제기된 견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특허 규정안의 전반적인 골격에 관한 지침(guideline)을 마련하고, COREPER로 하여금 공동체 특허 규정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는 바, 합의된 지침 내용 아래 기술함.

가. EU의 유럽 특허조약 가입

- 공동체 특허의 허여(grant)와 행정의 중심 역할은 유럽 특허청(EPO)이 담당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EU의 유럽 특허조약(EPC) 가입을 위한 EPC 개정작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현 의장국으로 하여금 오는 6.25-29간 개최 예정인 EPC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에 상기 의제가 포함되도록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위임함.

나. 각 회원국 특허청의 역할

- 각 회원국 특허청은 공동체 특허와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체 특허출원에 관련 상담 지도, 공동체 특허 출원의 접수 및 EPO 송달, 공동체 특허관련 정보의 전달을 예시하고 있음.
- 각 회원국 특허청이 원하면서 공동체 특허를 다룰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자국의 언어(EU 공식 언어중 하나이어야 함)를 사용, 검색과 같은 심사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되(최종적인 특허허여는 EPO가 담당), 이 경우 각국 특허청에 위임될 업무의 성격과 업무의 양에 대한 문

제는 공동체 특허의 質(quality)과 균일성(uniformity)에 대한 보증의 필요성과 출원인의 요구 등이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함.

다. 공동체 특허 출원비용과 사용 언어 문제

- 출원비용에 관해서는 경쟁적인 수준이 되어야 하며, 갹신 수수료는 현행 유럽특허의 평균 갹신 수수료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함.
- 사용 언어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며, 차별금지 원칙 등 일반적인 원칙의 적용만을 발표함. 기타 번역비용을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번역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함.

라. 수익금의 배분

- 공동체 특허의 갹신을 위한 연차수수료의 일부를 각 회원국 특허청에 분배하는 문제를 EPO와 협의하되, 분배의 규모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에 따라 각 회원국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도록 함.

마. 사법 관할문제

- 공동체 특허의 사법 관할 문제는 NICE 회의에서 채택된 EC 조약 제 225조 a와 229조 a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함.
- 이에 따라 제1심은 공동체법의 적용과 비효과 및 자국 언어사용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국내법원(national court)이 담당하고, 항소심은 유럽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이 담당하는 것으로 함.

2. 평가 및 분석

- 상기와 같이 급변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공동체 특허제도와 관련하여 각 회원국 특허청의 역학과 사법관할 및 EU의 EPC 가입문제 등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하였으며, COREPER로 하여금 우선 순위를 두고 작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공동체 특허제도의 추진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공동체 특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용 언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바, 이는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부터 반대가 있으며, 이중 라틴아메리카들의 특허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스페인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차기 EU 의장국인 벨기에의 역할과 COREPER의 향후 조정 작업의 결과가 주목됨.

발특2002/1

알레르기 진단키트 세계 특허 출원

미국·유럽 등 서방 선진국에서 알레르기 연구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의 한 바이오 벤처 기업이 알레르기 진단키트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하는 개가를 올렸다.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팍스바이오젠(www.paxbiogen.com 대표 김근영)은 미국 버지니아 의과대학 민헤기 교수팀과 미국 메디칼센터 쉬린 렌 교수팀과 공동으로 개발한 알레르기 진단키트를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 특허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출원한 알레르기 진단키트는 알레르기 질병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알려진 '과민성 반응에 의한 급발작 사망(Anaphylaxis)' 과 관련된 것으로 작년 미국에서만 330만명이 검사를 받았고, 매년 수백명 이상의 사망을 초래하는 알레르기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팍스바이오젠은 "자가항체 효소복합체 진단키트

이 색 특 허

를 이용해 개인에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질환을 미리 확인·예

방하고, 알레르기 발병 후 치료차

원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알레르기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알레르기 발병과 이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현재 특별한 치료제 없이 억제제에 머물고 있는 알레르기 치료제 개발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팍스바이오젠은 "알레르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은 5000만명 이상이 알레르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 알레르기 진단키트 시장만 연간 5조원에 달한다"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 진단키트를 생산·판매하는 '파마사 앤 업존' 등 다국적 제약회사를 통해 진단키트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진단키트 기술 제공에 따른 로열티 및 기타 수익금만 연간 수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디지털타임스